

모집정원감축처분 취소청구의 소

소송종류	행정소송	법원명	서울고등법원
사건번호	2018누○○○○○	사건유형	기타
원고(피항소인)	○○○	피고(항소인)	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
판결선고일	2018.05.25.	비고	
사건개요	<p>2012.7월경 ☆☆☆☆☆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원고의 유치원 행정실장 ●●● (설립자 자녀)가 2006.06.25.부터 2010.09.20.까지 해외 체류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보수 77,579,830원 등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☆☆☆장관은 2013.03.15.경 □□□□□□□□에게 원고에 대한 경징계 처분 요구 및 부당지급된 보수 등에 대한 시정 처분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감사결과 통보를 하였고, □□□□□□□□은 감사 결과 통보를 피고에게 전달하여 처분을 요구함. 피고는 2013. 4. 8. 원고에 대하여 교☆☆☆ 사립유치원 지원 및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이행하라는 통지서('이 사건 통지')를 송부하였고, 2017.02.23. ☆☆☆ 감사결과 불이행으로 원고의 유치원 정원 20% 감축 처분하였고, 2017.05.17. 원고는 소를 제기함.</p>		
주 문	<p>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 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</p>		
청구취지 (항소취지)	<p>1. 청구취지 피고가 2017.02.23. 원고에 대하여 한 2017학년도 모집 정원 20% 감축 처분을 취소한다. 2.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</p>		
판결이유	<p>이 사건 통지의 실질적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☆☆☆의 특정감사 결과를 알리면서 그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서를 제출하고,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한 결과를 제출하는 것 등을 요구 내지 통지하면서 그에 대한 불복방법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며, 이 사건 통지서의 어느 곳에서도 근거법령으로 구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을 들고 있거나, 구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라고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통지를 피고가 구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한 시정명령으로 보기는 어려움. 이에 따라 부존재하는 선행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, 항소를 기각함.</p>		
결 론	<p>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</p>		